

## 증인구인신청

사 건 2000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

원 고 ㅇㅇㅇ

피 고 〈〉〉

아래의 증인이 고의로 변론기일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다가 20〇〇. 〇. 〇〇. 23:00 야간특별송달로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환장을 받아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증인의 표시

성 명 : ■■■

주 소 : 00시 00구 00로 00 (우편번호 000-000)

주민등록번호 : 00000-00000

전화 · 휴대폰번호 :

직업: 농업

2000. 0. 0.

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○민사단독 귀중
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	제출부수	신청서 1부	www.klac.or
구인사유	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(拘引) 하도록 명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).			
증인의 의무	증인은 출석의무, 진술의무, 선서의 의무가 있음(민사소송법 제 311조, 제318조, 제319조).			
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	<ul> <li>①중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중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②법원은 중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중인을 7일 이내의 감치(監置)에 처한다(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, 제2항).</li> <li>·중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중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(민사소송법 제318조, 제311조 제1항).</li> <li>·중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이로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과 대료에 처함(민사소송법 제326조, 제318조).</li> </ul>			
기 타	일에 출석하지 아니히 이것 또한 실패로 돌여	아여 여러 차 아간 경우에	이 증인을 소환하였으니데 구인까지 하려 하였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 법원 1971. 7. 27. 선고	으나 하지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